

# 2023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 고도화를 통해 전통문화 산업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2023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의 수요기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4월

## 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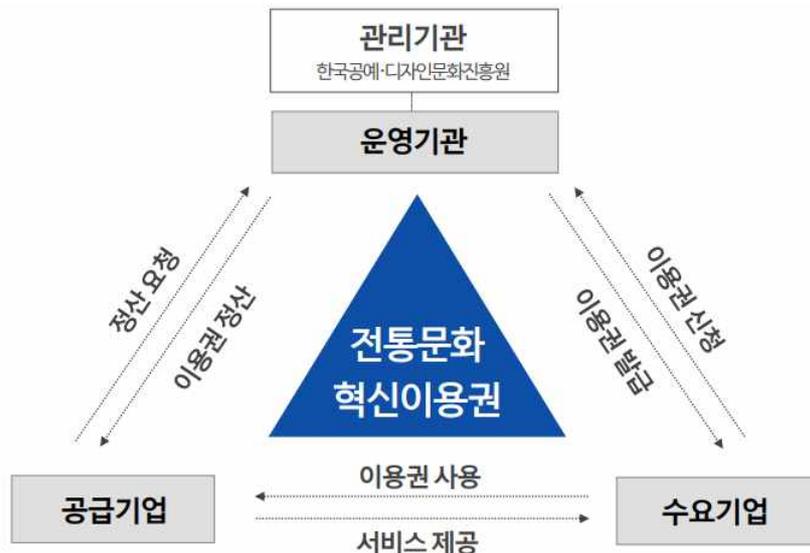
##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전통문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및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여 전통문화산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
-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해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요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산업의 현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견인

### □ 사업내용

-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혁신이용권 지급·활용



[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개념도 ]

## II

## 공모개요

□ **공모명** : 2023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

□ **주최** : 문화체육관광부

□ **주관** 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
□ **공모기간** : '23년 4월 28일(금)~5월 27일(토)

□ **선정발표** : '23년 6월 중(예정)

※ 전통문화혁신이용권 및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, 선정기업 개별 통보

□ **지원대상** ※ 지원 제외 대상은 IV. 공모 유의사항 참조

○ ①,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①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
②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(법인 또는 개인)

※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한 경우,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

※ 관련 법령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□ **지원규모**

○ 수요기업 40개사(사업고도화 35개사, 기술혁신 5개사)

총 880백만원(지원금 800백만원)

※ 기업당 지원금 22백만원(지원금 20백만원, 자부담금 10% 매칭 필수)

□ **지원내용**

○ 전통문화산업의 사업고도화 및 기술혁신에 필요한 서비스를 **전통문화 혁신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원**

※ 전통문화 혁신이용권(바우처)

전통문화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

공급기업 : 전통문화 분야 기업에게 기술이전, 경영 컨설팅, 디자인 등의 이용권 서비스 제공

수요기업 :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

○ 이용권 프로그램(서비스) 구성 : 2개 분야 7개 프로그램

※ 사업고도화 분야는 이용권(금액) 한도 내에서 최대 2개 프로그램(서비스) 신청 가능

분야	프로그램	서비스 유형
기술혁신	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관리	- 연구개발(R&D)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 및 컨설팅 -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과 권리획득을 위한 기술료 지원 등 - 전통기술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, 등록 서비스, 비용지원 등
사업고도화	플랫폼 구축	- 스마트 기반 기술 도입 고도화 지원(메타버스, XR, VR, AR 등 ) - 온라인플랫폼 (모바일, 웹 등) 및 비대면 역량 강화 시스템구축 등
	시제품 제작	- 다품종 소량의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기술 접목한 시제품 제작 등
	경영 컨설팅	- 시장동향 분석, 시장성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·분석 및 컨설팅 - 품질향상 및 운영·관리 전략 등을 위한 경영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등
	홍보·마케팅	- 제품(서비스) 온·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- 매체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온·오프라인 홍보 등
	디자인 강화	- 모션그래픽, 영상디자인 등 미디어 디자인 - 브로셔, 포스터, 패키지, 인포그래픽 등 시각디자인 - 브랜드(네이밍, 브랜딩, CI, BI 등), 시각 환경 디자인 등 역량 강화 디자인
	환경개선	- 작업장 내 유해 요소 제거 및 작업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등

[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프로그램(서비스) 메뉴판 ]

○ 지원예산 : 수요기업당 **22백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**

구분	지원금(국비)	자부담금*(수요기업)
금액	2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	2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이용권 총액	22,000,000원(부가세 포함)	

\* 자부담금 ①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참여를 위해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비용

② 지원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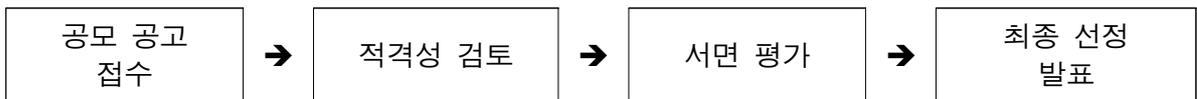
※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금(국비)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, 관리 기관 및 운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자부담금 납부를 확약하고 이행해야 함

※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금액은 자부담금이 지원금에 우선하여 소진되며, 지원금은 자부담금이 소진된 시점부터 사용됨

○ 컨설팅 지원 : 이용권 서비스에 대한 **2회 이상의 컨설팅 지원**

□ 선정 절차 및 방법

- 선정 절차 : 적격성 검토(제출서류) → 서면 평가 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
  - ① 적격성 검토 : 지원자격 불충분, 관련서류 미제출 등을 통한 적격 여부 판단
  - ② 서면 평가 : 지원 타당성, 이용권 활용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선정 절차 흐름도



- ※ 환경개선 등 경우 운영기관-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별도의 현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
- 평가 기준 : 지원 타당성, 이용권 활용계획 구체성,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 진행
-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산술평균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

□ 공모 접수

- 접수기간 : '23년 4월 28일(금)~5월 27일(토)
- 접수방법 :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(www.kcdf.or.kr/voucher) 통해 접수
  - <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 접수절차 >



- ※ 접수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 누리집 업로드(세부 접수방법 누리집 공지 참조)
- 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, 공모 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
- ※ 공모신청 시 붙임1. 공모 제출서류 작성가이드 참고

□ 문의처

- 문의 :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무국
  - 사업고도화 02-398-1682 b\_voucher@kcdf.kr
  - 기술혁신 02-398-1696, 02-958-4975 t\_voucher@kcdf.kr
- \* 문의 시간 : 평일 10:00~17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-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, 집행 및 정산, 결과보고서 검수 등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과 진흥원 운영 규정,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운영지침을 따름
-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해야 함.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경우, 해당연도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
-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협약체결 기간 내 참여기업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, 신청 자격 재검토에 따른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
- 사업 부정행위 판정 시 자격 취소, 부정수금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
-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참여기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 조회 동의를 전제함
- 선정된 기업은 주관처가 진행하는 교육, 매칭행사, 컨설팅, 사업평가, 보고회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, 공모 지원이 불가하고 공모 지원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

① 아래 공모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- 본 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중복 참가하고 있거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
- 운영기관과 대표자가 같은 기업
- 공급기업 또는 운영기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같은 기업
- 공급기업 또는 운영기관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
- 정부 지원사업 제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(하위조직 포함)
- ※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참여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- ② 자부담금(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금의 10%)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  - ※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
-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하였거나 심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④ 제출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전통문화산업 종사 확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
- ⑤ 사업 협약기간에 이용권(바우처) 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
- ⑥ 참여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
- ⑦ 신청기업(대표자 포함)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총괄·관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⑧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의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
-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
  - ※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기업의 구성원일 경우 제외
-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
  - ※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
  - ※ 최종 선정기업은 업무협약 시, 참여 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 서약서 제출 필수

□ 공모 제출서류

○ 공모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		비고	
서식 1-1	필수	수요기업 신청서-사업고도화 분야 1부	공모 분야별 신청서 작성	
서식 1-2		수요기업 신청서-기술혁신 분야 1부		
서식 2-1		수요기업 사업계획서-사업고도화 분야 1부	공모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	
서식 2-2		수요기업 사업계획서-기술혁신 분야 1부		
서식 3	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모든 사업 참여 인력 작성	
서식 4	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		
서식 5		서약서 1부		
첨부 1	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국세청 홈택스 발급본	
첨부 2		지방세/국세/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	공고일 이후 발급본	
첨부 3		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	공고일 이후 발급본	
첨부 4		중소기업확인서 1부	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발급( <a href="https://sminfo.mss.go.kr">https://sminfo.mss.go.kr</a> )	
서식 6		해당 시	사용인감계 1부	
첨부 6			법인등기부등본	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
서식 7			기업소개서 1부	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전통문화 산업 종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

- ※ 서류 작성 시, 공모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 및 유의사항 참고
- ※ 전통문화혁신이용권 누리집에 파일 업로드 시 pdf로 변환, 서류명 변경하여 제출 (★제출서류명\_기업명) (예시) 1. 수요기업신청서-사업고도화 분야\_○○○기업
- ※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,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

□ 공모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 및 유의 사항

- 공모 신청서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
  - 사업고도화 분야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금액 내에서 최대 2개 프로그램(서비스) 신청 및 최대 2개 이용권 협약체결이 가능하며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중복

## 체크(필수) 후 제출

- 공모 신청 시 분야(사업고도화, 기술혁신) 중복 신청 가능. 단 최종 사업참여는 1개 분야에 한하여 가능함(중복으로 선정된 경우, 사업 참여 분야 선택 가능)
- ※ 컨설팅 결과에 따라 상호협약에 의해 사업참여 분야가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서[서식 1-1, 서식 1-2]는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신청서상 미 기재시에는 불인정 됨. 신청서 작성 요령 아래표 참고

### [신청서 작성 요령]

- 1) 주 생산품 : 기업의 생산 품목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명을 기재
- 2) 표준산업분류코드(10차) : 주 생산품(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생산 품목)에 해당하는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재, 주 생산품과 다르게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
※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분류포털(<https://kssc.kostat.go.kr:8443>)에서 검색 가능  
(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)
- 3) 매출액 :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재하며,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(간편장부대상자 등)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기재  
※ 필요 시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4) 종업원 수 : 고용보험가입자명부의 전년도 연말 기준 인원을 기재
- 5) 지원내용 : 혁신이용권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 서비스 이용 가능(중복체크 필수)

- 사업계획서[서식 2-1, 서식 2-2] 작성 시 파란 안내 글자를 참고(확인 후 삭제), 사업수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
- 사업계획서[서식 2-1, 서식 2-2] 작성 시 항목별 기술 분량 고려하여 작성  
※ 기업 소개: 2p 이상, 지원 필요성: 1p 이상, 사용계획: 2p 이상, 향후 활용계획: 1p 이상
- 사업계획서[서식 2-1, 서식 2-2] 작성 시 본문 글꼴은 휴먼명조 13pt로 작성하고 파란 안내 글자는 삭제 후, 검정색으로 작성
-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전통문화산업 종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, 기업소개서[서식 7] 제출 필수
- 공모신청서류 제출일자는 최종 제출하는 접수 일자로 기재
-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양식 일부 변경 가능
- 프로그램(서비스) 중 환경개선 신청 시, 현장 사진 첨부 필수
- 사진 파일 첨부할 경우,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 고려하여 첨부
-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 기입 시 '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' 제출 필수